



제 416회 국회 (임시회)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신설〉

■ 강민국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27호)

2024. 7.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김 건 오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참고사항	2
IV . 검토의견	3
1.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 내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신설(안 제6조제7호의3,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3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강민국 의원 등 13인

나. 발의연월일 : 2024. 6. 4.

다. 회부연월일 : 2024. 6. 1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우주산업은 대표적인 기술집약적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새로운 기술과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으면서 세계 각국의 우주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우리나라도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우주항공분야의 국가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우주산업 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였음.

그런데 우주산업의 발전을 이끌어갈 인재들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기업유치를 위한 지원 및 우수한 정주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세제지원 근거를 마련하며 교육여건 개선 등 정주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우주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호의3,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Ⅲ.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12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V. 검토의견

1. 우주산업클러스터 및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 내 투자진흥지구 지정 근거 신설(안 제6조제7호의3, 제23조의2부터 제23조의6까지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우주항공청장이 국가우주위원회 심의를 거쳐 우주산업클러스터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역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투자진흥지구에 대한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 및 조세 특례를 두며, 투자진흥지구에 소재한 연구기관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생략)	제6조(국가우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제6호의 사항은 국가의 안전보장 등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② ----- -----. ----- ----- -----.
1. ~ 7의2. (생략)	1. ~ 7의2. (현행과 같음)
<u><신설></u>	<u>7의3. 제23조의2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제23조의3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u>

현행	개정안
8. (생략) ③ ~ ⑧ (생략) <u><신설></u>	<u>정해제에 관한 사항</u> 8. (현행과 같음) ③ ~ ⑧ (현행과 같음) <u>제23조의2(투자진흥지구 지정) ①</u> <u>우주항공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항공 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안에서 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의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u> <u>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u> <u>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 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u> <u>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u> <u>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u> <u>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u> <u>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u> <u>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u>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제23조의3(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u> <u>1. 제2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u> <u>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u>

현행	개정안
<신 설>	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갱신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3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투자진흥지구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우주산업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현행	개정안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투자진흥지구에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도 교육감은 투자진흥지구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23조의5(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23조의6(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나. 검토사항

- 현재 「우주개발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우주산업클러스터로 경남(위성특구), 전남(발사체특구), 대전(연구·인재특구)이 지정되어 있고, 「항공우주산업 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로 사천이 지정되어 있음.¹⁾
- 개정안을 통하여 현재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로 지정된 지역 내에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고 세제지원, 교육여건 개선 지원 등을 함으로써 우수 기업을 유치하고 우주항공산업을 진흥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투자진흥지구 지정 및 지원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타 입법례와 개정안을 비교해보면 투자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한 지원 내용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다른 입법례가 주로 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개정안의 지원 방안은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뿐만 아니라 정주여건 개선 등 지역 활성화에도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이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²⁾와 안

1) [참고1]우주산업클러스터 지정 현황 및 [참고2]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

2)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는 제외한다)의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혁신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 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혁신도시에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 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광역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도 교육감은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의4가 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이나,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8³⁾과 안 제23조의5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음.

<투자진흥 지구 지정 및 지원 관련 입법례 비교>

구분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명칭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투자진흥지구	제주투자진흥지구	투자진흥지구
지원 내용	·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 입주기업에 대한 토지 등의 임대료 감면 ·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 투자자 또는 입주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 입주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 입주기업에 대한 국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 특례	·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한 세제 지원 ·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대학,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에 대한 자금 지원

② 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3)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63조의8(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지역에 입주하는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 활성화를 통한 인재확보, 인프라 구축 등이 기업의 유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투자진흥지구에 관련 지원을 규정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다른 많은 입법례의 지원 규정과 달리 지역 활성화 지원 규정을 둘 필요성에 대해서는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보임.
- 참고로, 현재 국회 국토위원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0065호)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제2200278호)에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의 규정이 있으므로, 심사과정에서 관련 법안의 심사 경과⁴⁾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또한, 안 제23조의6에 따른 조세특례는 이 규정 자체만으로는 직접 조세감면 효과를 가져오지 못하며 강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200125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 법률안」(의안번호 제220012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음.

4) 2024년 7월 8일 기준, 두 법률안 모두 국토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전체회의에 상정된 적 없음.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법과 개정안의 관련 조문 비교표>

구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의안번호 제2200065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제2200278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0127호)
투 자 진 흥 지 구 지 정	제44조(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 안에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각 호는 규정 안 되어 있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제44조(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정지역등 안에서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우주산업 및 「우주개발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우주개발사업 등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각 호는 규정 안 되어 있음)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제23조의2(투자진흥지구 지정) ① 우주항공청장은 제22조에 따라 지정된 우주산업클러스터 또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제8조의2에 따라 지정된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가 위치한 지역 안에서 우주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유치금액 등의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및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위치 및 면적 2. 투자진흥지구의 주요 사업내용

구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의안번호 제2200065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제2200278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0127호)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방법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투자진흥지구의 개발 또는 관리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방법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투 자 진 흥 지 구 지 정 해 제	제4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4조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갱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	제45조(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44조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갱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	제23조의3(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 ① 우주항공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1. 제23조의2에 따라 고시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투자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 2. 투자의 현저한 부진 등으로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해당 투자자에 대하여 6개월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기준을 갱출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구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의안번호 제2200065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제2200278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0127호)
	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초의 이행 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4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예정지역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예정지역등에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도교육감은 우주항공복합도시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41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예정지역등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 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예정지역등에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도교육감은 우주항공복합도시에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3조의4(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① 투자진흥지구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우주산업의 특성에 맞는 인력양성과 교육여건의 개선 등을 위하여 해당 투자진흥지구에서 「초·중등교육법」 제61조에 따른 특례를 적용받거나 특례를 적용받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이하 "자율학교"라 한다) 또는 같은 법에 따른 특수분야의 전문적인 교육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특수목적고등학교"라 한다)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시·도교육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지정을 요청받은 시·도교육감은 투자진흥지구에서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구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의안번호 제2200065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제2200278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0127호)
	② 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지정할 수 있다. ② 자율학교의 장 또는 특수목적고등학교의 장은 해당 시·도 교육감 또는 교육장에게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운영에 필요한 교원의 임용 또는 소속 교원의 전보유예(본인의 동의를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요청할 수 있다.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제43조(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 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등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지역등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제43조(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 등 운영에 대한 지원) ① 국가는 우주항공복합도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정지역등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정지역등에 입주하는 연구기관 및 국제기구에 대하여는 시설의 임차 및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제23조의5(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대학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국내외 연구기관, 국제기구, 종합병원 및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2조제2호의 대학에 부지의 매입 및 시설의 건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구체적인 지원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

구분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및 개발 특별법안」 (의안번호 제2200065호)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제2200278호)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2200127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통령령으로 정한다.
세제지원	제46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투자진흥지구 내 입주 기업 또는 투 자자에 대하여 「조세특 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입주 기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지보조금 2. 고용보조금 3. 고용훈련보조금 4. 제품성능 검사비용에 관한 지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금	제46조(세제 및 자금지원 등) ①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는 투자진흥구역 의 입주 기업 또는 투 자자에 대하여 「조세특 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 ② 시·도지사는 입주 기업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지보조금 2. 고용보조금 3. 고용훈련보조금 4. 제품성능 검사비용에 관한 지원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자금	제23조의6(세제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투 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 또는 투자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및 지방세를 감면 할 수 있다.

문 의 처

02)6788-5227

참고1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현황 [자료 : 우주항공청]

□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 현황

- ('22.7.7)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 의결(우주개발진흥실무(위)) → 발사체·위성 2대 특구 지정 계획 발표
- ('22.10.7) 『우주산업 클러스터 추진계획 수정안』 의결(우주개발진흥실무(위)) → 발사체·위성·인재의 3대 특구 지정 계획 발표
- ('22.12) 『우주산업 클러스터 지정(안)』 의결(국가우주(위)) → 전남·경남·대전을 각각 발사체·위성·인재 특구로 최종 지정(삼각체제 확정)

□ 관련 사업 현황

-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총사업비 규모 적정성 검토중)

- 우주경제 본격화를 위해 정부·지자체·민간의 역량을 결집하여, 세계 수준의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
 - (위성특구(경남)) 다양한 위성 개발 지원을 위해 발사·궤도·전자파 등 우주환경시험시설을 갖춘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24~'26)
 - (발사체특구(전남)) 민간 로켓 발사장 선제 구축, 발사체 핵심 구성품 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위한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24~'27)
 - (연구·인재특구(대전)) 우주항공 분야 실험·실습 심의 교육 플랫폼으로서 '우주인재양성센터' 및 관련 R&D 지원('24~'28)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참고2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현황 (자료 : 우주항공청)

□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 현황

- ('12) 대통령 지역공약 우주항공산업클러스터 조성 반영
- ('13.3.26)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14.8.7) 사천 항공우주특화단지 지정 공고(산업부)
- ('14.11월)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 협약체결(산업부↔지자체↔협회)

□ 관련 사업 현황

(단위: 억 원)

세부사업	사업기간	사업비(억 원)					사업내용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민자	
합 계		410	250	50	40	70	5개 사업
공익용 항공표면처리시설	'14~'17	206	136			70	부지 16,588㎡, 표면처리공장 8,772㎡ 및 시설 구축(종포산단 내)
공용 시험평가장비동 지원	'14~'18	63	33 (장비)	30 ('17 20억 건축비 '18 10억)			시험평가장비동 1,534.76㎡ 및 장비 구축(항공우주센터내)
항공 상생 물류시스템 구축	'17~'19	74	34 (장비)	20 (사천시교부)	20		부지 13,563㎡, 공용물류센터 4,931㎡ 및 보관장비/운송장비 등(종포산단 내)
항공인력교육 및 육성	'14~'19	19	19				교육 및 프로그램개발
기업지원	'15~'17	28	28				R&D 지원('15년 3개사, 16년 5개사)

주: 항공상생물류시스템 구축(항공우주산업물류센터) 사천시비 부지매입비 및 19년 2회 추경 2억원 제외

자료: 과학기술정보통신부